

「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평창군에서 시행하여야 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한국수어 발전 및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, 청각장애인 등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국수화언어 교육·보급을 위한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농인 등의 편의 증진 및 민간에의 권장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라. 포상 근거 규정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군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2016년 제정된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서
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더불어 공용어임을 선언하고
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 바,

○ 우리 군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 권리를 보장하여
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하려는 점 등
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.

○ 검토결과,
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,
조례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
행정에서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99개 지자체, 도 내 11개 시·군

(강원도, 고성군, 동해시, 삼척시, 속초시, 양구군, 원주시, 인제군,
정선군, 태백시, 홍천군, 화천군)